#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95

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:정일영·정진욱·주철현

임호선 · 김문수 · 윤건영

박해철 • 박용갑 • 남인순

서미화・김 윤・황정아

안도걸 · 송재봉 · 최민희

이훈기 • 임미애 • 권향엽

이광희 • 박홍근 • 이용선

의원(2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 기처리장 등의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·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들이 공항이나 비행장으로 진입하여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,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##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5항 중 "된다"를 "되며, 새들의 공항 또는 비행장 내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6조(금지행위) ① ~ ④ (생	제56조(금지행위) ① ~ ④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	5		
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			
기가 이륙・착륙하는 방향의			
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			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			
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			
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			
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			
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			
해서는 아니 <u>된다</u> .	<u>되며, 새들의 공항 또</u>		
	는 비행장 내 진입을 유발할		
	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		
	<u>된다</u> .		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		